

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15 ~ 113 |
|----------|------------|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출연월일 | 2015. 11. 26. |
| 제 출 자 | 거창군수 |

1. 폐지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, 상위법인 「도로법」(‘14.5.21.시행) 제61조,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직접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「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 제117조,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105조, 별표 7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, 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규제개선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‘15. 11. 01. ~ 11. 20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